

‘엄마’라고 떠서 받았더니 보이스피싱...신종수법 주의

가족 전화 받았는데...“납치했으니 돈보내라” 협박 국제전화도 뒷부분 8자리 같으면 저장한 이름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휴대전

화에 저장된 번호로 발신인을 표시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신종 수법이 나타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에 엄마, 딸 등 가족 이

름이 뜨자 의심없이 전화를 받았다가 “가족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알몸 사진을 보내라” 등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 묻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국제전화라도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 일부가 일치할 경우 평소 저장해 놓은 이름으로 화면에 나타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가 ‘010-XXXX-

XXXX’일 경우 해외에서 뒷자리 ‘XXXX-XXXX’만 같게 전화를 걸면 저장해 놓은 번호로 인식된다는 설명이다.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가족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사기

범행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국수본은 “범죄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범죄조직들이 문자메시지(SMS)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만큼 SMS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철저히 확인하고 될 수 있으면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남진기자



‘광주시장 예비후보 무등산 개발 발언 규탄’ 퍼포먼스

무등산국립공원 복원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등 32개 시민사회단체가 5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이용섭-강기경 ‘광주시장 예비후보 무등산 접근성 제고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 개발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청소 도구로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2심 감형 왜?

향소심, 징역 3년 선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향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성종용·이수영·박정훈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향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상심리 평가보고서·응급기록지·요양보호사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A씨가 심신 미약 상

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지 않은 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3일부터 14일 오전 1시 사이 전남 한 지역 자택에서 아내 B(51)씨를 청소 도구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병변장애 3급인 B씨는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물을 가져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부엌에 불일을 봤다’ 등의 이유로 마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의 동기·경위와 수단·방법, A씨

가 범행 전후 보인 행동과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A씨는 아내인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와 마찬가지로 청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물을 가져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부엌에 불일을 봤다’ 등의 이유로 마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동취재본부



“코로나 시신 염 않겠다” 장례업계 반발

정부 “전과 우려 없어”

정부는 그간 화장이 권고된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 대해서도 매장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장례업계가 시신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5일 감염 우려를 거듭 불식시켰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신과 직접적 접촉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주위와 소독 절차를 잘 지킬 경우 감염 우려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가 폐지돼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해진 것이 골자다. 지난 1월 개정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침은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에서 ‘선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화장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사실상 매장도 허용됐으나 방역 당국이 바뀐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장례

현장에서는 화장만 가능한 것처럼 오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장사 방법을 다시 재검토한 것이다.

그러나 장례업계에서는 시신백에서 시신을 꺼내 염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전국 장례식장 30여곳이 한국장례협회에 ‘코로나 시신 보이콧’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코로나19는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 같은 것을 통해 감염된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양하는 지침을 보면 시신의 흥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시신의 위생 관리를 할 때에는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라는 가이드를 주고 있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시신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나 그런 증거는 없다는 것이 WHO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아울러 “미국 질병통제센터도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적용하던 감염병 예방수칙을 포함한 별도의 장례 지침을 올해 2월부터는 더 이상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